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27차 회의

1. 일 자 2009년 12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60호 — 2010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60호 — 「2010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향후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운용시한을 2009년 12월말에서 2010년 6월말로 재연장함에 따라 동 프로그램에 연계한 특별지원한도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동일한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10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0.0조 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61호 — 「200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정부의 회계연도말 원활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중 통합계정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의 상환 기한을 2010년 1월 15일로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내년에도 정부가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이 경우 상환기한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처럼 연내까지로 하고 정부가 요청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그 전해의 세입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환기간을 익년도 1월 15일로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200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개정(안)

>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1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